







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료 채취 사진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59 | 측정 종료 시간 : 10:39 | |
| 폐기물반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3:11 | 측정 종료 시간 : 13:51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4:01 | 측정 종료 시간 : 14:41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4:02 | 측정 종료 시간 : 14:42 | |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| 구분 | 지점 | 세부 지점수 | 시료채취위치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실내 |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| 4개 이상 | 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 | 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| |
| | 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 |
| | | 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 | 위생설비 지점 | 전수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| |
| | 폐기물보관지점 | 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| |
| | 음압기 배출구 | 전수 | 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| |
|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| |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분석번호 | AR.NO.20260322 | | | | | 분석 일시 | | 2026.03.22.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장비 (종류/수량) | 유량 (ℓ/분) | 측정일시 | 측정 결과 (f/cc) | 분석 계수 시야수 | 검출석면의 종류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2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2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Q - 1 | 부지경계선1 | KMS5100 / 1 | 10.35 | 2026.03.22. | - | 1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Q - 2 | 부지경계선2 | KMS5100 / 1 | 10.51 | 2026.03.22. | - | 1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Q - 3 | 부지경계선3 | KMS5100 / 1 | 10.47 | 2026.03.22. | - | 1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Q - 4 | 부지경계선4 | KMS5100 / 1 | 10.44 | 2026.03.22. | - | 1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Q - 5 | 위생설비입구 | KMS5100 / 1 | 10.35 | 2026.03.22. | 0.0042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Q - 6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45 | 2026.03.22. | 0.0047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Q - 7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44 | 2026.03.22. | 0.0047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Q - 8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40 | 2026.03.22. | 0.0035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Q - 9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53 | 2026.03.22. | 0.0053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Q - 10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36 | 2026.03.22. | 0.0054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Q - 11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28 | 2026.03.22. | 0.0036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 |
| Q - 12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29 | 2026.03.22. | 0.0036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 |
| 분석 연구원 | | | 구 지 연, 김 미 경 | | | | | |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㎢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㎢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 0.005/㎢ " < 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주식회사 하늘건설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| 구분 | 지점 | 세부 지점수 | 시료채취위치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실내 |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| 4개 이상 | 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 | 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| |
| | 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 |
| | | 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 | 위생설비 지점 | 전수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| |
| | 폐기물보관지점 | 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| |
| | 음압기 배출구 | 전수 | 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| |
|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| |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분석번호 | AR.NO.20260322 | | | | | 분석 일시 | | 2026.03.22.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장비 (종류/수량) | 유량 (ℓ/분) | 측정일시 | 측정 결과 (f/cc) | 분석 계수 시야수 | 검출석면의 종류 |
| | Q - 13 | 폐기물반출구 | KMS5100 / 1 | 10.33 | 2026.03.22. | 0.0048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Q - 14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51 | 2026.03.22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Q - 15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47 | 2026.03.22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Q - 16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44 | 2026.03.22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Q - 17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35 | 2026.03.22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| | | -이하여백- | | | | |
| 분석 연구원 | | 구 지 연, 김 미 경 | | | | | | |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c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 0.005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









주식회사 하늘건설

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 료 채 취 사 진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부지경계선1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01 | 측정 종료 시간 : 13:01 | |
| 부지경계선2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03 | 측정 종료 시간 : 13:03 | |
| 부지경계선3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06 | 측정 종료 시간 : 13:06 | |
| 부지경계선4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08 | 측정 종료 시간 : 13:08 | |
| 위생설비입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30 | 측정 종료 시간 : 10:10 | |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 료 채 취 사 진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52 | 측정 종료 시간 : 10:32 |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53 | 측정 종료 시간 : 10:33 |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54 | 측정 종료 시간 : 10:34 |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57 | 측정 종료 시간 : 10:37 |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58 | 측정 종료 시간 : 10:38 | |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 료 채 취 사 진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0:01 | 측정 종료 시간 : 10:41 |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0:03 | 측정 종료 시간 : 10:43 | |
| 폐기물반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3:15 | 측정 종료 시간 : 13:55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4:09 | 측정 종료 시간 : 14:49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4:10 | 측정 종료 시간 : 14:50 | |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| 구분 | 지점 | 세부 지점수 | 시료채취위치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실내 |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| 4개 이상 | 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 | 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| |
| | 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 |
| | | 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 | 위생설비 지점 | 전수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| |
| | 폐기물보관지점 | 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| |
| | 음압기 배출구 | 전수 | 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| |
|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| |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분석번호 | AR.NO.20260323 | | | | | 분석 일시 | | 2026.03.23.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장비 (종류/수량) | 유량 (ℓ/분) | 측정일시 | 측정 결과 (f/cc) | 분석 계수 시야수 | 검출석면의 종류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3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3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R - 1 | 부지경계선1 | KMS5100 / 1 | 10.35 | 2026.03.23. | - | 1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R - 2 | 부지경계선2 | KMS5100 / 1 | 10.51 | 2026.03.23. | - | 1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R - 3 | 부지경계선3 | KMS5100 / 1 | 10.47 | 2026.03.23. | - | 1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R - 4 | 부지경계선4 | KMS5100 / 1 | 10.44 | 2026.03.23. | - | 1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R - 5 | 위생설비입구 | KMS5100 / 1 | 10.35 | 2026.03.23. | 0.0042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R - 6 | 위생설비입구 | KMS5100 / 1 | 10.45 | 2026.03.23. | 0.0047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R - 7 | 위생설비입구 | KMS5100 / 1 | 10.44 | 2026.03.23. | 0.0047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R - 8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40 | 2026.03.23. | 0.0035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R - 9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53 | 2026.03.23. | 0.0053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R - 10 | 음압기배출구 | KMS5100 / 1 | 10.36 | 2026.03.23. | 0.0054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R - 11 | 폐기물반출구 | KMS5100 / 1 | 10.28 | 2026.03.23. | 0.0036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 |
| R - 12 | 폐기물반출구 | KMS5100 / 1 | 10.29 | 2026.03.23. | 0.0036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 |
| 분석 연구원 | 구 지 연, 김 미 경 | | | | | | | |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c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 0.005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주식회사 하늘건설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| 구분 | 지점 | 세부 지점수 | 시료채취위치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실내 |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| 4개 이상 | 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 | 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| |
| | 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 |
| | | 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 | 위생설비 지점 | 전수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| |
| | 폐기물보관지점 | 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| |
| | 음압기 배출구 | 전수 | 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| |
|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| |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분석번호 | AR.NO.20260323 | | | | | 분석 일시 | | 2026.03.23.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장비 (종류/수량) | 유량 (ℓ/분) | 측정일시 | 측정 결과 (f/cc) | 분석 계수 시야수 | 검출석면의 종류 |
| | R - 13 | 폐기물반출구 | KMS5100 / 1 | 10.33 | 2026.03.23. | 0.0048 | 300 | 백석면 (기준치미만) |
| | R - 14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51 | 2026.03.23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R - 15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47 | 2026.03.23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R - 16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44 | 2026.03.23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R - 17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35 | 2026.03.23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| | | -이하여백- | | | | |
| 분석 연구원 | | | | 구 지 연, 김 미 경 | | | | |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c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5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주식회사 하늘건설



■ 석면비산 측정지점 위치도

측정 건물 위치도

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료 채취 사진 | | | |
|----------|---|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부지경계선1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8:52 | 측정 종료 시간 : 12:52 | |
| 부지경계선2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8:54 | 측정 종료 시간 : 12:54 | |
| 부지경계선3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8:57 | 측정 종료 시간 : 12:57 | |
| 부지경계선4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8:59 | 측정 종료 시간 : 12:59 | |
| 위생설비입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15 | 측정 종료 시간 : 09:55 | |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료 채취 사진 | | | |
|----------|---|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위생설비입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25 | 측정 종료 시간 : 10:05 | |
| 위생설비입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9:18 | 측정 종료 시간 : 09:58 |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0:08 | 측정 종료 시간 : 10:48 |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0:09 | 측정 종료 시간 : 10:49 | |
| 음압기배출구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0:28 | 측정 종료 시간 : 11:08 | |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료 채 취 사 진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폐기물반출구 |  측정 시작 시간 : 11:30 |  측정 종료 시간 : 12:10 | |
| 폐기물반출구 |  측정 시작 시간 : 11:40 |  측정 종료 시간 : 12:20 | |
| 폐기물반출구 |  측정 시작 시간 : 11:33 |  측정 종료 시간 : 12:23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 측정 시작 시간 : 12:51 |  측정 종료 시간 : 13:31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 측정 시작 시간 : 12:52 |  측정 종료 시간 : 13:32 | |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| 구분 | 지점 | 세부 지점수 | 시료채취위치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실내 |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| | 4개 이상 | 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 | 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|
| | 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 |
| | | 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 | 위생설비 지점 | 전수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| |
| | 폐기물보관지점 | 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| |
| | 음압기 배출구 | 전수 | 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| |
|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| |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분석번호 | AR.NO.20260324 | | | | 분석 일시 | | 2026.03.24.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장비 (종류/수량) | 유량 (ℓ/분) | 측정일시 | 측정 결과 (f/cc) | 분석 계수 시야수 | 검출석면의 종류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4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4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S - 1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33 | 2026.03.24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S - 2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31 | 2026.03.24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S - 3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55 | 2026.03.24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S - 4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28 | 2026.03.24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| | | -이하여백-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분석 연구원 | | 구 지 연, 김 미 경 | | | | | | |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c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5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주식회사 하늘건설



■ 석면비산 측정지점 위치도

측정 건물 위치도

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료 채취 사진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|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2:15 | 측정 종료 시간 : 12:55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|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2:17 | 측정 종료 시간 : 12:57 | |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| 구분 | 지점 | 세부 지점수 | 시료채취위치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실내 |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| 4개 이상 | 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 | 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| |
| | 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 |
| | | 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 | 위생설비 지점 | 전수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| |
| | 폐기물보관지점 | 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| |
| | 음압기 배출구 | 전수 | 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| |
|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| |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분석번호 | AR.NO.20260325 | | | | | 분석 일시 | | 2026.03.25.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장비 (종류/수량) | 유량 (ℓ/분) | 측정일시 | 측정 결과 (f/cc) | 분석 계수 시야수 | 검출석면의 종류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5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5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T - 1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33 | 2026.03.25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T - 2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30 | 2026.03.25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T - 3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51 | 2026.03.25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T - 4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44 | 2026.03.25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| | | | -이하여백-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분석 연구원 | | | 구 지 연, 김 미 경 | | | | | |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c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 0.005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주식회사 하늘건설



■ 석면비산 측정지점 위치도

측정 건물 위치도

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료 채취 사진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|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1:18 | 측정 종료 시간 : 11:58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|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1:19 | 측정 종료 시간 : 11:59 | |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| 구분 | 지점 | 세부 지점수 | 시료채취위치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실내 |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| 4개 이상 | 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 | 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| |
| | 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 |
| | | 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 | 위생설비 지점 | 전수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| |
| | 폐기물보관지점 | 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| |
| | 음압기 배출구 | 전수 | 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| |
|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| |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분석번호 | AR.NO.20260326 | | | | 분석 일시 | | 2026.03.26.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장비 (종류/수량) | 유량 (l/분) | 측정일시 | 측정 결과 (f/cc) | 분석 계수 시야수 | 검출석면의 종류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6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6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U - 1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30 | 2026.03.26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U - 2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29 | 2026.03.26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U - 3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41 | 2026.03.26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U - 4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40 | 2026.03.26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| | | | -이하여백-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분석 연구원 | | 구 지 연, 김 미 경 | | | | | | |

※ 참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c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5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주식회사 하늘건설



■ 석면비산 측정지점 위치도

측정 건물 위치도

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료 채취 사진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|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0:31 | 측정 종료 시간 : 11:11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|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10:32 | 측정 종료 시간 : 11:12 | |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| 구분 | 지점 | 세부 지점수 | 시료채취위치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실내 |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| 4개 이상 | 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 | 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| |
| | 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 |
| | | 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 | 위생설비 지점 | 전수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| |
| | 폐기물보관지점 | 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| |
| | 음압기 배출구 | 전수 | 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| |
|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 | 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| |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분석번호 | AR.NO.20260327 | | | | | 분석 일시 | | 2026.03.27.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장비 (종류/수량) | 유량 (ℓ/분) | 측정일시 | 측정 결과 (f/cc) | 분석 계수 시야수 | 검출석면의 종류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7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공시료 | - | - | - | 2026.03.27. | - | -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V - 1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51 | 2026.03.27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V - 2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50 | 2026.03.27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V - 3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33 | 2026.03.27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V - 4 | 폐기물보관지점 | KMS5100 / 1 | 10.31 | 2026.03.27. | - | 300 | 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 |
| | | | | -이하여백- | | | | |
| 분석 연구원 | | 구 지 연, 김 미 경 | | | | | | |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㎥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㎥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5/㎥ " 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주식회사 하늘건설







■ 석면비산 측정지점 위치도

측정 건물 위치도



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| 시료 채취 사진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|----|
| 측정지점 | 비산측정 시작 사진 | 비산측정 종료 사진 | 비고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8:28 | 측정 종료 시간 : 09:08 | |
| 폐기물보관지점 (2) |  |  | |
| | 측정 시작 시간 : 08:29 | 측정 종료 시간 : 09:09 | |

■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(별지 제77호서식) <개정 2023. 9. 27.>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

※ 유의사항을 읽고 적신히 주시기 바라며 []에는 √ 표시를 합니다.

[양쪽]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신고번호 | (지방고용노동관서명) - 호 | 처리기간 | 7 일 | |
| 구분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건축물 | 위치(소재지)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(공대1호관, 4호관) | 건축물등록번호 5213014500102900002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비 | 용도 교육연구시설 | 건물명(설비명) 군산대학교 공대1,4호관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치원 또는 학교 건축물수 | |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비사업 | 세대수 | 연면적 4512.75 + 4003.94m ² | |
|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타 | | | |
| 소유자 | 성명 (담당자) 국(교육부)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-0(미룡동) | 전화번호 063-469-4052 | | |
| 석면해체·제거업자 | 업체명(상호) 유한회사 쌍용환경건설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제6829호 전화번호 063-642-8279 | 대표자 성명 홍유진 휴대전화번호 010-2299-4432 | | |
| 작업장 | 공사현장명(공사명·직업명) 국립군산대 공대 1,4호관 리모델링 석 연철거공사 | | | |
| 해체 사유 및 기간 | 해체사유 리모델링 | 해체기간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3월 28일까지 | | |
| 석면함유 자재(물질)의 종류 및 면적 | 종류 | 면적(m ²)·부피(m ³)·길이(m) | | |
| | 분무재(분필재) 내화피복재 | | | |
| | 천장재 지붕재 | 6,855.3 | | |
| | 벽재(벽체의 마감재) | 247.32 | | |
| | 캐스킷 합 계 | 0.5 7,103.12 | | |
| 현장책임자 | 성명 이문실 | 전화번호 010-2299-4432 | | |
|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(별첨있음) | 성명 | 생년월일 | 주소 | 전화번호 |
| | 윤승기 | 650505 |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50,113/201 | 01036523110 |
| | 김한섭 | 770314 | 전주시 완산구 띠박골2길 7-14 | 01045245882 |
| | 김태연 | 751211 | 익산시 무왕로20길17,103/409 | 01066122331 |
| | 조영선 | 761208 | 익산시 중앙로15길 3-1 | 01024386606 |
| | 김해균 | 720925 | 익산시 서동로5길 3 | 01092731759 |
| | 장재기 | 750712 | 익산시 오산면 번영로 1550 | 01045490354 |
| | 안영귀 | 760505 |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39번길 33 | 01021955197 |
| 정현종 | 800802 | 완주군 봉동읍 문산2로65, 402 | 01074428551 | |

※ 석면함유자재(물질)의 종류 및 면적의 내용이 작업근로자가 알을 경우 별첨하여 제출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25년 12월 일

신고인

유한회사 쌍용환경건설

홍유진(서명)

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귀하

210mm×297mm 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종지(80g/㎡)]

■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의7서식] <개정 2011.3.3>

석면해체·제거작업 변경 신고서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| 7 일 |
|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 군산 20253006 | | | |
| 현장명(공시명·자위명) 국립군산대 공대 1,4호관 리모델링 석면철거공사 | | | |
|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| | | |
| 석면해체·제거업자 | 업자명(상호) 유한회사 쌍용환경건설 | 전화번호 : 063-642-8279 | |
| | | F A X : 063-222-3230 | |

변경사유 발생일 : 2026. 02. 20. (인원증가 & 해체면적 감소(석면재조사)).

| 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|---------------|--|--|
| 변경사항 | 인원 추가 및 총면적감소 | <p>총 인원 - 37명.</p> <p>석면면적 - 6,855.30 m² .</p> <p>발라이트 - 247.32 m² .</p> <p>개스킷 - 0.50 m².</p> <p>총해체면적 - 7,103.12 m².</p> | <p>인원 증가 - 박성민 추가 .</p> <p>총인원 - 38명.</p> <p>석면면적 - 5,892.23 m²</p> <p>(공대1호관-3,294.28m²</p> <p>공대4호관-2,597.95m²)</p> <p>개스킷-0.50m²</p> <p>발라이트 - 257.56 m².</p> <p>총해체면적 - 6,150.29 m².</p> |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2026 년 02 월 25 일

신고인 (유)쌍용환경건설 대표 홍유진(서명도장인)

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귀하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두서류 |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공지사항

본 민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친해번호(후대전화)도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

■ 석면조사기관지정서

제 2025-120045 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[법인 등]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기관명 | 주식회사 하늘건설 | |
| 소재지 | 전북 익산시 인북로 215((남중동)) | |
| 대표자성명 | 구지연 | |
| 지정사항 | 총 업무(지정) 한계 | 해당없음 |
| | 관할 지역 업무(지정) 한계 | 해당없음 |
| | 업무(지정) 지역 | 전국 |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※ “지정사항” 및 “준수사항”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5. 3. 4.

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

